

서울특별시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전화 (02)731-6660 /전송731-6956
 처리부서: 세무행정과(본관3층 연금매점옆) 담당 김태호

문서번호 세정 13415-687

시행일자 1997. 10. 4

(경유)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부	년		
국	장		
과	장		
계	장		
기	안		
		법제심사계장 심사필	협조

제목 시세감면조례개정안 일범예고

1. 내무부 세제 13400-327(97.10.02)와 관련입니다.
2. 위 문서와 관련하여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미리 시민에게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별첨과 같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안의 일범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첨부 일범예고(안) 1부. 끝.

(별첨 1부)

수신: 국세청장관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안 일범예고(안) 1부. 끝.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미리 시민에게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별첨과 같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일범예고를 하고자 하니 서울시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일범예고(안) 1부. 끝.

세무행정과장

공

고(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7-10호

공고문서 1997.10.13 798호		
등록번호	1997.10.13	798호
성	경	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10.13

서울특별시장

1. 자치법규개정 :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

2. 개정의 주요내용 및 그 취지

- 가. 국가유공자의 경우 본인명의로 등록된 승용차만 지방세를 면제하였으나,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하고, 6급 국가유공자는 자동차 1차량 면제를 하였으나 취득세와 등록세까지 면제함.
- 나.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가 기존에 승용차를 양도·환차했거나 이전·탈소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차를 취득하던 등록상 2차량이 되어 감면이 되지 않는바, 30일 이내에 종전 차량을 이전·탈소등록하면 1차량소유로 간주하여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함.
- 다. 장애인이 본인·부모·배우자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만 시세를 면제하였으나, 장애인의 직계비속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함.
- 라. 60㎡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감면이 되지 않으면 분양받은 자도 감면을 하지 않았는바, 이를 개선하여 분양받은 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을 하도록 함.

마. 시정개발연구원등 서울특별시가 출자한 단체나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바. 낚형자동차 및 검인계약서 사용에 대한 시세감면을 '97년말 폐지를 전제로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왔는바, 계획대로 더 이상 감면을 하지 않음.

사. 지방세법 개정('97.8.30 공포, 법률 제5406호)에 반영되어 지방세 감면 축소 된 것은 법률개정 입법취지에 맞추어 조례에 다시 규정하지 아니함.

아. 기타 시세감면조례에 대한 것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시행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7년 10월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색워서 작성)를 서울특별시장 (청로: 세무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대평로1가 31, 전화 731-6656~9, FAX: 731-63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참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각 항목별 2 시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